◇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2019. 1. 1. 발효) 사항을 반영하여 고체위험물질의 품명 분류에 따라 고체위험물질 운송 시 화물정보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후 비나 눈이 내린 경우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는 방법 외에도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 수분치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12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등 부적합한 상태인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하기 위해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27. “중합성 물질”이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분자 또는 중합체(重合體)를 형성하여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8. “덧 포장”(OVERPACK)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을 말한다.

29.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란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30.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란 위험물의 온도 제어에 실패하여 비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 하며, 덧 포장한 경우에는 덧 포장에도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덧 포장(OVERPACK)” 표시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회수압력용기는 수용량이 3천 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의2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관련서류”를 “위험물 명세서”로, “회수용기 또는”을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으로, “관련 서류”를 “위험물 명세서”로, “PACKAGING)””을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이 위험한 분해 또는 중합(重合)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제어, 반응 억제제 사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제2급 고압가스
2. 제3급 인화성 액체류
3. 제6.1급 독물
4. 제8급 부식성 물질

제20조제1항 중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위험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단서,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각각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2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선장은 운송하는 위험물로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되었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및 원인과 해당 위험물의 품명, 수량,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제5항 중 “관련서류”를 각각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로, “회수용기 또는”을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으로, “PACKAGING)””을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제3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장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제가 컨테이너에 투입되고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에 선적해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에 제33조제4항에 따른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송하인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날짜와 시간, 사용한 훈증제의 종류와 양(量)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화약류 분류의 승인) ①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는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제연합번호, 품명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화약류 분류에 대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국내항 간의 운송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TDG)가 개발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른 화약류 분류 시험결과 또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화약류의 국제연합번호가 기재된 서류
2. 해당 화약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수출 허가증,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서
4. 그 밖에 화약류 분류를 위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분류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화약류 분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단서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각각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급 1.4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8미터”를 “12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측으로부터 선박 너비의 8분의 1 또는 2.4미터 중 짧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두어 적재할 것

제123조의2제1항, 제147조제3항 단서, 제148조제3항 단서, 제163조 단서, 제197조 단서,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205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20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각각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208조제1항 본문 중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을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험·검사기관이어야”를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로 한다.

제213조제1항 중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국제해상위험물규칙”으로 한다.

제220조제2항 중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장소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225조 단서, 제232조제2항, 제23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각각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Administrator of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호도식 제1호나목 중 정표찰 8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정표찰 9란 다음에 정표찰 9A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도식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표찰 8		
구분		색상
바탕	위	백색
	아래	흑색
그림		흑색
숫자		백색

정표찰 9A	
구분	색상
바탕	백색
띠	흑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 리튬배터리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는 정표찰이며, 컨테이너 부착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 리튬배터리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테두리 빗금무늬	적색
*에는 국제연합번호를 적을 것 **에는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적을 것	

※ 표찰은 폭 120밀리미터, 높이 1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테두리 빗금무늬의 폭은 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화물 크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치수를 폭 105밀리미터, 높이 74밀리미터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

별지 제3호도식 제2호가목 비고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스탬프로 찍거나 각인하는 경우에는 유엔 포장용기 표시 대신에 대문자 “UN”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도식 제4호가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엔 포장용기 표시:

※ 대형금속용기에 스탬프로 찍거나 각인하는 경우에는 유엔 포장용기 표시 대신에 대문자 “UN”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도식 제5호의 표 중 재충전압력용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충전압력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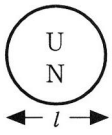	(i)/(j)/(k)/(m)/(q)/(r) (d)/(e)/(f)/(g)/(h) (a)/ROK/(b)/(c)

14. “(q)”는 설계수명이 한정된 복합압력용기의 경우 그 설계수명의 만료일을 문자 “FINAL” 다음에 연도(4자리) 및 월(2자리)로 표시하며 “/”로 구분한다.

15. “(r)”은 설계수명이 15년 이상이거나 무제한인 복합압력용기의 경우 제조일(최초검사일)부터 15년에 해당하는 날짜를 문자 “SERVICE” 다음에 연도(4자리) 및 월(2자리)로 표시하며 “/”로 구분한다.

별지 제3호도식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의 표시: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에는 “SALVAGE” 문자를 표시해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포장명세	내용기 Inner Packagings	
	중간용기 Intermediate Packagings	
	외용기 Outer Packagings	
	추가 포장요건 또는 포장방법 Additional packing instructions or packing method	
분류확인	분류 업체 또는 기관 Classification approval	
	시험/분석/정의 등의 분류 근거 Classification made by test/analogy/definition	

화약류 명세 Description of explosives

항목 번호 Item No:	제품명 Market name of explosives	품명 Proper Shipping Name	국제연합 번호 UN Number	등급 Division	포장요건 Packaging requirements	특별사항 Special Packing	순화약 질량 Net explosive mass (kg)	부품/재고 번호 Part/Stock number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약류분류승인서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TDG)가 개발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른 화약류 분류 시험결과 또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화약류의 국제연합번호가 기재된 서류 2. 해당 화약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수출 허가증,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서(국내항 간의 운송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화약류 분류를 위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뒤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 적합	화약류분류승인서 발급
신청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제 호
Approval No. _____

쪽 번호
Page No. /

화약류분류승인서
Competent Authority Classification Approval Document of Explosives

1 주무관청 Competent authority	참조문서 번호 Document Reference
2 국가규정 Modal or national regulations:	
3 분류업체 또는 기관 Classification approval:	
4 승인받은 업체(제조자)의 명칭과 주소 Name and address of approval holder:	
5 내장용기, 중간용기 및 외장용기 등 포장명세 Packaging description including inner packagings, intermediate packagings, and outer packagings:	
6 추가 포장요건 또는 포장방법 Additional packing instructions or packing method description:	
7 시험/분석/정의 등의 분류 근거 Classification made by test / analogy / definition	
8 특별 조건 또는 제한사항 Special conditions or limitations:	

이 문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조의2제3항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제2.1.3.6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주무관청에서 승인 및 발급하였습니다.

This document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2.1.3.6 of the IMDG Co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주무관청의 승인 책임자 성명
Name of authorizing pers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발행일자
Date of Issue:

지방해양수산청장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지정검사기관의 장
Chief of the Designated Inspection Authority

직인

제 호
Approval No. _____

쪽 번호
Page No. /

항목번호 Item No:	제품명 Market name of explosives	품명 Proper Shipping Name	국제연합 번호 UN Number	등급 Division	포장요건 Packaging requirements	특별 사항 Special Packing	순화약 질량 Net explosive mass (kg)	부품/재고 번호 Part/Stock numbe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송하려는 위험물이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등인 경우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사고 및 위험물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며, 화주가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약류 분류에 대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3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 2020.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생산업자의 출고)”를 “(공적판매처 출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마스크”를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1)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같은 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로, “80%”를 “60%”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의 신고 및 승인 등)”을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산량”을 “생산량 및 제5조에 따른 수출량”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일 생산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라 한다)를 생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나.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2.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가 의료, 방역, 안전, 외교 등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마스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